고시 제2013 - 50호

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및 동법 35조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9. 11.



1. 영업시간의 제한

- 가. 레이다 설치 낚시어선 : 22:00부터 익일 03:00까지
- 나, 선외기 또는 레이다 미설치 낚시어선의 영업제한
-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(기상청 발표기준)

2. 소형낚시어선의 기준

- 3톤 미만의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 및 총톤수 3톤 미만의 낚시어선

3. 영업구역의 제한

- 가.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 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
- 나. 무인도서 중 갯바위(간출암) 반경 50m이내 해역
- 다. 선외기 설치 및 레이더 미설치 낚시어선은 하동군 선착장에서 3마일 이내

4. 낚시어선업 안전운항조치 및 인명안전에 관한 장비착용

- 가. 기상특보 발효 시 및 기상불량 시 : 출항금지
- 나. 안전운항 위험시 : 출항제한
- 다. 승선자(승객, 선원)은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

5. 승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

-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상에 잡종선(목재류, 합성수지류 등)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

6.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

가. 승객 준수사항

- 1)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수산자원보호, 수질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2) 낚시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3)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 - 가)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나)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운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다)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라)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마)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양생 동ㆍ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 - 바)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 - 사) 폭발물,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
- 4)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5)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및 취사를 자제합니다.
- 6)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의 포획· 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을 준수하고 포획·채취 시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7)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하여야 합니다.

나. 낚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

- 1) 낚시어선업자는 [별표1]에서 정한 『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』를 갖추어야 하며,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.
- 2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를 유지 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가) 승객과 상호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장비를 확인 하여야 한다.
- 나) 출입항 신고 시 낚시지점별 하선인원을 신고하여 승객의 위치를 알려야한다.
- 3)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에 안내한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관할시장, 군수, 구청장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4)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.
- 5)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지급하여야 하며,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6)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수거식 간이 변기 비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.
- 7) 낚시어선업자는 『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』을 [별표2]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8)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,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.
- 9) 폭발물,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- 10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 하거나 술에 취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변경고시(하동군 고시 제2007-297호)는 폐지한다.
-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어선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준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것으로 하며, 이 고시를 적용한다.

[별표 1]

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

(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)

1. 구명설비

- 가) 승선인원의 12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, 이중 20%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.
- 나) 최대승선인원의 3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
- 다) 지름 10mm 이상,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

2. 소화 설비

- 가)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: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
- 나)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: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
- 3. 전기 설비: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 설비

4. 그 밖의 설비

- 가)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
- 나)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
- 다) 핸드레일
- 라) 비상용 구급약품 세트
- 마) 자기점화등 1개 이상
- ※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중 낚시어선업신고 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[별표 2]

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

(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)

1. 게시판의 제작 기준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

나. 색상

○ 글씨 : 검은색

○ 바탕 : 낚시어선업 신고 확인증 - 흰색/ 승객 준수사항은 - 노란색

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

○ 게시판의 부착 장소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아래의 〈예시〉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
2. 게시 장소

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승선정원 명

승객준수사항

- 1. 낚시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 시 안전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어선업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2. 낚시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 휴대폰 등 연락처를 낚시어선업자에게 알려야 하며, 야영을 자제하여야 합니다.
- 3. 낚시승객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②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③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④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⑤ 미끼를 낚시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
 - ⑥ 낚시제한기준(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,2)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
 - ⑦ 낚시어선 내 및 낚시장소에서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투기 하는 행위
 - 8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 - ⑨ 폭발물,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
- 4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대피 요청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